

# 축산업자의 법인전환

-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,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. -

**점** 진적으로 축산업자도 규모가 커지고 기업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, 농업정책의 수혜 및 정책자금의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축산인이 늘어나고 있다. 여기서는 농업법인에 관한 사항을 2회에 걸쳐 정리하려고 한다.

## 1.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

### (1) 근거법령

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며, 영농조합법인(제16조)과 농업회사법인(제19조)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,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, 사업범위, 설립·등기·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### (2) 법인 성격

동법에서 영농조합법인은 “협업적 농업경영체”로, 농업회사 법인은 “기업적 경영체”로 규정하고 있으며, 영농조합법인은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,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



임 기 완

공인회계사/세무사

파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



### (3) 설립 주체

기본적으로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, 구체적 요건은 아래와 같음

- 발기인 :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, 회사법인은 상법상의 발기인 규정에 의함 (합명/합자회사 2인 이상, 유한회사 2~50인, 주식회사 1인 이상)
- 비농업인 출자 : 영농조합법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. 반면,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총출자액의 9/10을 초과할 수 없음.
- \* 다만,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, 총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한도로 함

### (4) 사업 범위

- 영농조합법인 :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,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, 농산물의 공동출하·가공·수출, 농작업 대행, 기타 등
- 농업회사법인 : 농업경영, 농산물의 유통·가공·판매, 농작업 대행 이외에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 생산·공급,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, 농산물의 구매·비축사업, 농기계 장비의

임대·수리·보관,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

- \* 농지소유 :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농지소유 가능. 단,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1/3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(농지법 제2조3호)

### (5) 의결권

- 영농조합법인은 1인1표,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지분에 의함
-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,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임
- \* 다만,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을 두어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음.
- 농업회사법인은 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출자 지분에 의하여 의결권이 달라지며, 비농업인도 출자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인정

다음호에서는 법인전환의 효익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다. **양계**

필자 연락처 : 02-561-6616